

HACCP 적용 인증업체에 대한 우대규정 명확히 해야

HACCP 적용 인증업체에 대해 우대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의 이같은 주장은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 받을 경우 농림부 고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우대조치) 제 1항 제 1호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에 있어 면제해주거나 최소한으로 경감하는 등 우대혜택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도계장 최초로 지난 9. 14일부로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HACCP인증)받은 하림의 경우 인증결정 후 실시된 위생검사에서 인증이전에 비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하림이 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도에는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주)화인코리아 등 타 회원사들도 HACCP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어 이러한 불만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HACCP 자체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 적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HACCP 적용 자체가 안전 축산물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임에는 분명하나 축산기업이 손쉽게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 작업장 규모별로 HACCP 적용대상 시기를 분류하고 시행작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림이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림은 인건비를 제외

하고도 HACCP 적용을 위해 20여억원 이상을 자금을 투입, 공조시스템 설치하는 물론 전 생산라인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HACCP 적용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주)체리부로식품, (주)마니커, (주)화인코리아 등 나머지 업체들도 HACCP의 조기도입을 위해 막바지 박차를 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HACCP의 적용은 국내 계육산업에 있어 최대 위협요소인 살모넬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도 위생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HACCP의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위생과 관련된 우대조치를 약속한 것이니 만큼 이를 명확히 처리해 HACCP를 적용하고자 하는 작업장을 부담을 최소화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약속대로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 작업장에 대해 위생 당국에서 수행하는 통상의 위생검사(출입·수거·검사)가 면제되거나 또한 최소한으로 경감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처럼 HACCP적용 작업장에 대해 위생검사(출입·수거·검사)를 면제해 주거나 면제가 불가하여 최소한으로 경감할 시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확실히 규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HACCP 인증업체의 매장에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농림부에서 각 시·도나 검역원에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배정 시 인증업체를 감안하여 배정, HACCP 적용업체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